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2도8341 가.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 
나.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

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

상 고 인 피고인들

변 호 인 변호사 윤길웅(피고인 1을 위하여)  
법무법인 위공(피고인 2를 위하여)  
담당변호사 신현호

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노490 판결

판 결 선 고 2022. 9. 7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'가액'에



대법관 이동원 \_\_\_\_\_

주 심 대법관 천대엽 \_\_\_\_\_